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웅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5

발의년월일 : 2016년 6월 10일
발 의 자 : 최웅식, 김경자(양천), 김상훈, 맹진영, 문상모, 성중기, 송재형, 우창윤, 유동균, 이명희, 이윤희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민원처리 전담과 민원행정의 통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인 “신속행정추진단”을 “시민소통기획관”으로 조직소관을 변경(7.1일자)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‘신속행정추진단’을 삭제함(안 제33조제1항제2호 자목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자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파목으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생 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) 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아. (생 략) **자. 신속행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** 차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타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파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하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	2. 행정자치위원회 가.~아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자.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. 서울장학재단에 관한 사항 카.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타.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파.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
3.~10. (생 략)	3.~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1부시장 직속 기구인 “신속행정추진단”을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조직 소관을 변경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.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의원 최웅식(3702-1221)